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3(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소속 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자료 : 총 2종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영상(총 2회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프레젠테이션

○ 자료 활용

- 교육영상: 자체 수강시스템 탑재 또는 집합교육 시 상영
- 교육 프레젠테이션: 집합교육 시 활용(자료 비치만으로는 교육 미인정)
* 제공한 자료는 변형없이 원본으로만 활용가능

○ 영상 탑재 및 자료 활용 관련 문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 붙임 1. 교육영상 1종(총 2회차)
2. 교육 프레젠테이션 1종.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병무청장, 강원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국립정신건강센터장(정신건강교육과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특별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천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아동권리보장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한국보육진흥원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한국노인복지진흥원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재단법인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전국노숙인시설협회장,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조산협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한국정신요양협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한국학원총연합회장, 한국교습소총연합회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장, 소방청장(119구급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지원과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 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회장, 한국임상심리학회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주무관 김선태 서기관 최기전 장애인권익지 전결 2022. 7. 28.
원과장 박중균

협조자

시행 장애인권익지원과-3955 (2022. 7. 2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http://www.mohw.go.kr
10동) 6층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44-202-3312 팩스번호 044-202-3961 / kst95@korea.kr / 비공개(5)